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고 제2025-2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여명자 의원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난임극복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참조: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전화 032-509-7028 / 팩스 032-509-76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붙임

가. 관련법령 발체사항 1부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
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중
복·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
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

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학”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학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